

❖ 정부시책 ❖

輸入 증전기기 사용前 검사 개선

앞으로 외산증전기기를 수입 판매하는 자는 사용전 검사시 반드시 국산품과 동일하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상산업부는 그동안 국산증전기기에만 적용해오던 사용전 검사시 시험성적서 제출확인제도를 앞으로는 제작회사 자체시험성적서만으로 품질 및 성능시험을 대체해오던 수입 증전기기에 대해서도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토록 증전기기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을 개정했다.

통상산업부는 그동안 수입증전기기들이 대부분 미국, 일본, 유럽등 제품이 주종이었으나, 최근들어 중국, 대만등의 저가 동남아산 제품이 크게 증가, 국내 소비자의 안전도 및

품질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수입증전기기에 대해서도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확인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시험기관인 전기연구소와 증전기기 시험에 관해 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시험기관에 대해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인정기로 했다.

또한 외국 제작회사 및 외국산 증전기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등도 국내에서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통상산업부는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및 IEEE(전기전자기술자협회)등의 국제규격을 시험규격으로 정해 외산 기자재의 시험 편의성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수입선 다변화품목 일부 해제

통상산업부는 작년 6월에 마련된 수입선 다변화제도 운영방침에 따라 '96년 7월 10개 품목, '97년 1월 25개 품목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 수입선다변화 해제대상을 14개

품목으로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품목은 유압브레이카, 연필절삭기, 석유화학용 압력용기, 유리타일,

기타 모혼방직물, 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M-MDI), 무정전 전원장치, 카셋형의 자동차용 음성재생기기(데크메카니즘 포함), 지프형 자동차(실린더용량 1천cc이하, 가솔린), 기타의 자동차(1천cc-1500cc 가솔린), 기타의 자동차(1500cc-3천cc 가솔린), 화물선(일반화물선, 컨테이너선 및 벌크선 제외), 공업용 및 확산로용의 열전대 및 동부분품 등이다.

이와함께 병 또는 기타용기의 충전용기계 등 2개품목은 수입선다변화 대상에서 부분 해제된다.

통산부는 이밖에 전자개폐기(전자접촉기 포함) 600v, 375Kw에 대해서는 세번을 기존의 HS 8536.50.9000에서 HS 8536.50.4000로 변경했다.

이번 해제에 따라 수입선다변화품목수는 현재의 127개 품목에서 오는 7월부터 113개 품목으로 줄어들게 된다.

■ 완전해제 대상품목(전기관련 품목)

HS	품 목 명
8504 40 2010	무정전 전원장치

■ 세번변경 품목(1개)

현		변	
HS	품 목	HS	품 목
8536.50.9000	전자개폐기(전자접촉기 포함) 600V, 375Kw이하	8536.50.4000	전자개폐기(전자접촉기 포함) 600V, 375Kw이하

대체에너지 개발촉진法 개정 추진

정부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금융·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기초 수요를 창출하여 대체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촉진키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태양열·태양광발전 등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제·재정·금융 및 행정상의 조치와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규모 에너지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사업에 투자 또는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에 대해 대체에너지를 지정하여 이용 또는 이용설비를 설치토록 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지난 '94년 기후변화협약

이후 탄산가스 배출규제 등으로 세계각국은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활용확대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같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대체에너지 보급은 매년 2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총에너지 수요의 0.7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ITA) 발효

7월 1일부터 정보기술협정(ITA)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2천년에 반도체소자 등 335개(HSK 10단위 기준) 정보통신관련 제품들의 관세가 무세화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40여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되고 오는 '99년에는 50% 정도의 관세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하반기부터 ITA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ITA협정에서 우리나라가 관세를 양허한 품목들은 7월 1일부터 양허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ITA협정에 의해 양허관세를 적용받는 품

목들은 연차적으로 매년 25%씩 오는 2천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품목들은 유예기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최종년도에 무세화하게 된다.

하반기부터 양허관세규정을 적용받는 품목은 모두 385개이며 이중 39개 품목은 2002년까지, 11개 품목은 2004년까지 무세화가 유예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WTO각료회의에서 컴퓨터·반도체·통신장비 등 203개 품목을 오는 2천년까지 연차적으로 무세화하는 ITA협정에 합의한바 있는데 우리나라는 203개 품목 중 6개 품목은 2002년까지, 4개 품목은 2004년까지 각각 이행기간을 유예 받았었다.

ITA협정상 대상품목수와 양허관세규정상

대상품목수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ITA 협정상 대상품목은 상업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대상품목을 HSK 10단위 기준으로 구체화하면서 품목수가 늘어난 것이다.

한편 재경원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시 미국과 관세양허를 합의한 농산물 중 변성유장분말에 대해서도 이를 양허관세 품목분류체계에 반영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은 관세법 43조 8의 규정에 의해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제기구와 관세협상을 하고 관세를 양허할 수 있으며 관세양허의 대상이 되는 물품·세율과 적용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여타 세율에 우선해 적용된다.

기업 R & D 관세감면대상물품 조정

재정경제원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대상 물품을 종전의 275개에서 신규지정 43개, 재지정 207개, 폐지 67개 등 250개로 조정하고 7월 1일부터 운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존 고시되어 관세감면되던 품목중 이번에 제외된 68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8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경우 감면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번에 관세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들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해 해당관세의 80%를 감면받게 된다.

재경원은 최근 업계의 연구·개발 범위가 넓어지고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이에 소

요되는 기자재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조정했다며 기존 감면대상품목중 국내생산이 가능하거나 자동부품삽입기와 같이 도입계획이 없는 물품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연삭기·강신도시험기·성능시험기와 같이 주로 중소기업이 사용하거나 기업의 기술개발상 핵심요소가 되는 연구기자재등이 중점적으로 관세감면 대상에 지정됐다.

한편 재경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간 410억원의 관세감면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관세감면대상 연구개발용품

■ 신규지정품목(전기관련 품목)

품 명	용 도
리액터	송배전 전력기기제품의 단락시험을 위한 시험용전류의 크기 및 역률을 조정하기 위한 기기
보호차단기	전력기기 제품의 단락시험시 발전기를 보호하고, 시험제품의 차단실패시 시험제품과 시험기기를 보호하는 기기
개폐기	시험조건에 따른 회로를 접속하기 위한 기기를 변환시키는 기기
차단기시험기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보호계전기시험기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로서 릴레이 및 콘트롤러를 시험하는 기기

중소물품 의무구매기관 확대

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기관이 현재의 43개에서 70개로 늘어난다.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와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등 5개기관이 추가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하반기중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현재보다 17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기관은 정부부처로는 정보통신부 1개부,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7개 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한국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교통안전진흥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등 9개법인이다.

중기청은 이들 기관이 중소기업 생산 물품에 대한 구매를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무구매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납득할 만한 사유를 중기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기청은 연간 물품구매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

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대병원 등 5개 기관을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와 단체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통산부, ISO 9000 인증운영요령 개정

품질보증체제(ISO 9000)의 신뢰도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정절차 및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5월 9일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 개정으로 인증·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로 위탁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인증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전면 개정·고시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ISO 9000 규격에 맞게 문서만 구비해도 인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품질시스템을 구축해 최소한 3개월 이상 시행·유지하고 내부품질감사를 1회 실시해 시정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부적합 사항이 완전히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인증

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인증서에 담당 심사원의 명단을 기재토록 하는 인증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인증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범위를 35개에서 77개로 늘리는 등 인증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증심사 기준, 인증기관의 인증가능 범위, 인증심사위원 확보현황 등을 인증신청자에게 제공해 인증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한편 ISO 9000 인증제도가 지난 '93년부터 국내에서 실시된 이래 현재 2,700여건의 인증이 이루어지는 등 매년 100%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품질보다는 인증 획득시 주어지는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인증기관들도 이를 남발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